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-4호

「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월 13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 예고

1. 제정이유

병역의무를 집안 대대로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병역 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대전광역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 도록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설치 ·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

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).

라. 대전광역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).

3. 의견제출

- 가.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복지 환경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 사항
 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 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주소 전화번호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실) (전화 042-270-5127, FAX 042-270-5039, E-mail : kjun0928@korea.kr)
- 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 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"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병역명문가 지원) 대전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병역명문가 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홍보 및 예우)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 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제5조(우대)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대전광역시에서 설치·운영하 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 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다.
- 제6조(협조요청)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 령

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

개정 2013.12.11. 병무청 훈령 제115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병역명문가"란 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복무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.
- 2. "부상금" 이란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3. "병역명문가 가족"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
- 제2조의2(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) ①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 다만,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.
 - 1.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, 준사관, 부사관,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(전투·의무·해양경찰, 경비교도대원, 의무소방원,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) 복무를 마쳤거나,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
 - 2. 국민방위군,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 · 25 전쟁에 참전한 사람
 - 3.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'한국광복군'으로 활동한 사람
 -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징병검사·입영 기피,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- 제3조(사업계획의 수립 등) 병무청장은 선정기준 등을 명시한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(병무지청장을 포함한

- 다. 이하 같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8조(병역명문가 인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) ①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병역명문가증서(별지 제6호서식) 및 병역명문가증(별표 2)을 발급하고 병역 명문가 증서대장(별지 제7호서식)과 병역명문가증 발급(수불)대장(별지 제8호서식)에 등재하여야 한다.
 -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병무행정인증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,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원할 경우 병역명문가 증 재발급 신청서(별지 제9호서식)를 제출 받아 재발급한다.
 - ③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영문으로 병역명문가 증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영문증서(별지 제6호의2서식)를 발급하고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발급대장(별지12호서식)에 등재하여야 한다.
 - ④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취업 추천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 취업 추천서(별지 제10호서식)를 발급하고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대장(별지12호서식)에 등재하여야 한다.
- 제19조(홍보) 창조행정담당관은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 홍보를 주관하고, 지방병무청장은 현수막 게시 등 지방청 자체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0조(병역명문가 우대)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,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.